

##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-13호

「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10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## 「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사유

1인 창조기업 요건확인을 위한 제출 증빙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외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불편 해소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1인 창조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 간소화(안 제4조)
- 나.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, 교육기관, 전담기관의 지정기간 규정 정비(안 제12조, 제26조, 제41조)

#### 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#### 4. 의견제출

「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. 1. 30.(월)까지 다음 사항을

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(참조 : 창업생태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 사유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bgiri76@korea.kr

2) 주소 : (우 30121)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(어진동) 세종파이낸스 센터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

3) 팩스 : 044-204-766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(전화 : 044-204-766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(www.mss.go.kr) “알림소식-법령정보-입법/행정예고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##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중 “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”을 “법인설립허가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 중 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”를 “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서류 제출인의 동의를 얻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. 다만, 서류 제출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2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1조의 제목 “(지정기간)”을 “(지정취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2항)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일 전이라도 전담기관”을 “전담기관”으로 한다.

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3조(재검토기한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

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서류 제출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12조(지원센터의 지정기간 및 재지정) ①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② 제9조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센터가 재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최종보고에 대한 평가로 재지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하고, 제8조 및 제9조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26조(교육기관의 지정기간 및 재지정) ① 교육기관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② 제23조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동일한 교육사업을 재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교육기관의 사업실적 최종보고에 대한 평가로 재지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하고, 제22조 및 제23조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41조(지정기간) ① 전담기관의

제41조(지정취소) <삭 제>

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 
으로 하며, 전담기관의 별도 의  
사표시가 없으면 지정기간의 만  
료와 함께 재지정을 신청한 것  
으로 본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  
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일  
전이라도 전담기관이 지정요건  
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  
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4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 
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 
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  
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 
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 
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재검  
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  
년 5월 6일까지로 한다.

----- 전담  
기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3조(재검토기한) 중소기업  
부 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  
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  
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
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 
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 
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 
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